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55

발의연월일 : 2020. 7. 24.

발 의 자:이수진·임오경·이해식

박재호 · 진성준 · 강병원

김영배 · 고영인 · 박성준

민형배・신정훈・허 영

인재근 · 김경협 · 안민석

한준호 · 송갑석 · 최기상

신현영 · 김남국 · 장경태

강선우・권인숙・황운하

이병후 · 양이워영 · 최혜영

오영화 · 이용우 의원

(29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사본의 교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실무상 수사기관이 제대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거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위법수집증거 문제와 함께 당사자의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영장 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 자체를 사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함.

이에 피고인 및 압수·수색 대상자가 영장집행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11 8조).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의 제목 중 "제시"를 "제시와 사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시하여야 한다"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8조(영장의 <u>제시</u>) 압수·수색	제118조(영장의 <u>제시와 사본 교</u>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	<u> 부</u>)
드시 <u>제시하여야 한다.</u> <u><단서</u>	제시하고
<u>신설></u>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거
	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
	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
	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
	<u>다.</u>